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5 특 별 부

### 판 결

사 건 2001누13227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구32044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10.

판 결 선 고 2003. 12. 3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사본공개거부처분의 경위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35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에 대한 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6.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A와 함께 피고에게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및 “서울특별시의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7. 26. 원고에게 “서울특별시의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 부분이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 자료실에 이미 공개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는 사본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사인(私人)에 관한 내용은 가리고 공개 한다는 결정을 한 후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0. 8. 23. 피고에게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같은 달 29. 사본교부의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당초의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결정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제4차 준비절차기일에 진술한 2001. 3. 15.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당초부터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 나. 거부처분의 존부

피고는 먼저, 원고의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000. 7. 26.자 처분은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를 결정, 통지한 처분으로서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공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단지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원고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그 소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본열람 방법에 의한 공개를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의의 존부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의 끝에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2항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의 사본교부 제한사유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내용 그대로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니고 ‘그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사본열람 방법에 의한 공개를 결정함으로써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8조 제2항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2)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정보공개 방법에 있어서의 재량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원칙적 또는 선행적인 공개방법으로 하여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먼저 열람을 하고, 그 결과 사본이 필요하거나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법 제9조, 제12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도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원고 이외의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고유업무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사본열람 방법에 의한 공개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 결정이다.

(나) 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본교부의 제한

이 사건 정보는 현금출납부 204권 14,778매, 일상경비출납부 233권 5,286매, 집행서류 관계철 798권 46,718매 등 합계 1,235권 66,782매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사본 교부 방법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법 제8조 제2항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법 제7조 제1항 제6, 7호에서도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라) 미보유정보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경찰청에 민생치안방범활동지원비 또는 지하철 수사대활동지원비 등으로 배정되어 집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재배정 관련서류만을 보관하고 재배정된 예산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은 경찰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미보유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권리남용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공개를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사용목적 외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사본의 열람만으로도 학술연구와 행정감시 등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피고로서는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정보공개청구에 계속 응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특히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개청구 사실의 통지까지 하여야 불이익을 받는 점, 최근 피고는 행정의 전문성·공개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전문지식을 매우 긴요하게 활용하는 한편 공개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관련법조” 부분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법 제8조 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다. 판단

##### (1) 정보공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우선, 법 제2조 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있어서 그 공개의 의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열람을 원칙적 또는 선행적 공개방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열람에 의한 방법만으로 공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공개방법의 선택에 있어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사본교부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정보가 같은 조항 소정의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공개를 하는 것이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 내지 34, 36, 37, 42 내지 44(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을 45의 일부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출납부, 집행서류 등 합계 39,751매로서 가로 43cm, 세로 32cm, 높이 25cm 규격의 종이상자로 46개 정도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를 모두 복사할 경우 일용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 증인 C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상 매수당 복사 수수료가 50원인 사실,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출납부 등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는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는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의 경우 통상적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열람현장에 입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비 측면에서 청구량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



공개청구가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후속사정에 불과하여 본건에 있어서의 업무 지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보유·관리자라 하더라도 그 산하의 여러 기관과 기구들에 산재해 있어 해당 기관과 기구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본열람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입회하여 유출 여부 등을 감시하게 되므로 인력과 시간의 소요 측면에서 사본교부의 경우보다 업무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다른 정보공개청구자에 대한 열람용으로 비치·관리하는 행정문서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점(제1심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01. 4. 20.자 준비서면 제11면 참조)을 더하여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의 사본교부로 인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3. 10. 27. 선고 2003두7354 판결은 사건의 당사자, 처분의 경위, 정보의 보유 형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과는 사정이 다른 경우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가 당원에 제출한 2003. 10. 24.자 '조정권고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는 청구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특정기간 일괄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는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작 피고가 다투는 것은 청구량의 과다 문제가 아니라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유형이나 성격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법 제8조 제2항을 이유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인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



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본열람이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법 제7조 제1항 제6, 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본건에 있어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 지출증빙에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개인식별정보 중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참가자 정보는 공무의 일환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인이나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그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7661 판결 참조).

따라서,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업비밀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에 피고가 면담장소 등으로 이용한 식당 등의 위치·명칭·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등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정보에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다거나 나아가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미보유정보의 공개 여부

피고가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경찰청에 민생치안방법활동지원비 또는 지하철수사대활동지원비 등으로 배정되어 집행된 예산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원고의 청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5)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권리남용에 관한 규정이 법에 특별히 정하여 있지 않은 이상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이론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잊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대



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우선,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공개를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사용목적 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없고, 또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개인식별 정보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대한 통지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분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갖고 있는 이상, 사본열람 방법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학술연구와 행정감시 등 원고의 사용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거나, 피고가 수많은 반복청구에 계속 응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피고는 법 제 8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근 \_\_\_\_\_

판사      이규진 \_\_\_\_\_

판사      이병세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별지 제1목록)

##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삭제)

(별지 제2목록)

## 공개제외 대상 정보

(공개제외 대상 정보 삭제)